

◇개정이유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 및 행정사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행정사로 개업하려는 경우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함(제9조제1항 및 제2항).
- 나.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3조제3항 신설, 제36조제1항제2호)
- 다.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의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제21조의2 신설).
- 라.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2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 마. 행정사는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 절차, 업무신고, 사무소 등의 설치, 행정사의 고용, 업무수행 방법, 해산, 합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3까지 신설).
- 바.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두고, 행정사로서 개업하려면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도록 함(제26조, 제2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

●**법률 제1739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제5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하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에 한정한다)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대규모 통신대란이 발생하면서 통신설비 또는 전력설비만 설치된 단일 지하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은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하였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 세 군

국무위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박 양 우

●법률 제1739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